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채인묵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71

발 의 년 월 일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채인묵 의원(1명)
찬 성 자 :권수정, 권영희, 김경영, 김인제, 김제리, 박상구, 박순규, 이준형, 전병주, 전석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전년도보다 약 2만명이 감소해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최초로 발생하였고, 서울시 인구(955만명, 2021년 8월 기준) 역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 이처럼 인구감소가 전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근접하고 있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인구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 차원의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구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인구변화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5년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의견청취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10조)

라.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인구변동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변동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의 적극 발굴 및 추진,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의 시행)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정책
3.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4.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시장은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 관련 소관 실·본부·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총괄부서의 담당 서기관이 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에게「서

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